

7. 宅地所有上限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제508호 1992. 6. 16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영 제2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동 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중인 택지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안의 택지

3.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군사시

설보호구역을 관할하는 부대장과 협의하여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결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택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택지

5.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공고한 지역안의 나대지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구·구역 또는 단지안에 있는 택지로서 당해 지구·구역 또는 단지의 지정 또는 결정의 고시를 한 날(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부터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등에 사업입안지로 등재되거나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준공일(준공전에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날)까지

의 기간중에 있는 택지

-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공업단지
- 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 마.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구역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위한 구역
-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7. 습지·급경사지등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확인은 당해 택지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택지의 지번·면적 및 건축의 제한기간과 건축이 불가능한 사유등이 기재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택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와 주민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용지등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도로·공원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입안중인 도시계획시설용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제9조의2제1항제1호).
- 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안에 있는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제9조의2제1항제2호).
- 다.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제9조의2제1항제3호).
- 라. 택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제9조의2제1항제6호).

〈건설부 제공〉